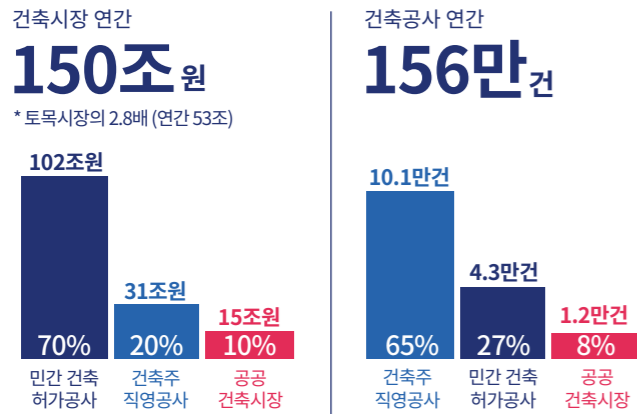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사회경제구조와 기술혁신에 따라 변화가 요구됩니다

\* 부가가치율 57.6% (한국전체산업 34.5%)  
고용유발계수 8.6% (한국전체산업 4.6의 2배)

##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주소\*



건축서비스산업시장 연간 8조 2,600억 원

건축사사무소 매출액 + 건축 엔지니어링 = 4조 7,000억 원

건축서비스산업의 비정상적 시장구조, 성장기반 취약,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에 대한 시장대응 미숙과 같은 문제점의 대안 필요

\*참고자료: 연합뉴스, 서수정, 이여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187 auri brief,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안, 2019.2.15

서울의 공공건축을 바꾸다.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주요 개정사항

건축기획 개념 규정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법개정을 통해 건축기획, 심의업무 관련 도입 및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시키고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설  
국가·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치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과 함께 서울 공공건축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을 설계하라 · U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 공공건축의 변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서울 공공건축이 변화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13.06제정, '14.06시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이유\*

1. 국토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법 제5조)
2. 국토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법 제8조)
3. 정부는 건축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시책 추진(법 제11조)
4. 국토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가능(법 제16조)
5. 공공기관이 설계 등을 발주시 적합한 발주방식 선정 의무(법 제21조)
6. 국토부장관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사업기획 등 자문수행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법 제23조~24조)
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위한 정책제도 연구조사 등 위한 건축진흥원 설립 및 지정(법 제25조~30조)
8.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법 제12조)
9. 지자체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가능(법 제31조)

\*2013.03.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20.01. 시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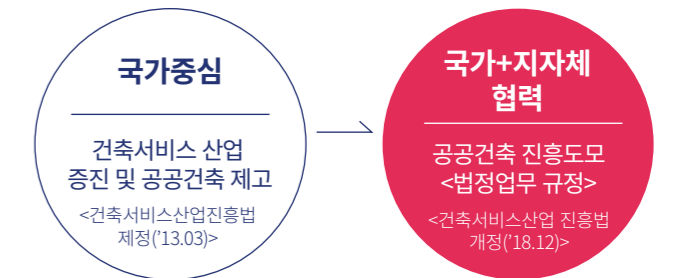
### 공공건축물 현황



개정 배경 공공건축물 사업방향 결정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업무

개정 목적 건축기획 등 기획심의업무 관련 개념 도입 및 세부절차 등 규정

\*2018.12.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서울 공공건축의 변화 넷!



## 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이 튼튼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 건축기획 개념이 명문화됩니다”

### 건축기획 신설,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제22조의2)

#### 건축기획이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대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사업  
→ 건축기획 의무화

#### 주 체

공공기관 수행(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포함) 의무,  
국가·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의뢰가능

#### 관련절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본구상, 건설공사  
기본계획, 공사수행방식 등 수행 인정



## 2.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대상 확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 1항)

####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동법 시행령 개정(19. 1. 15 개정, 20. 1. 16. 시행)으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설계비 2억원 이상 사업에서 설계비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 대 상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등

#### 주 체

공공기관이 지역공공건축센터 혹은 공공건축  
지원센터 의뢰  
(지역센터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국토부 승인)

#### 관련절차

30일 이내 의견회신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건축기획 수행시  
사전검토 예외



##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설계용역입찰 공고 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수행한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대 상

설계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 심의 주체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 설치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지역건축정책위원회(건축기본법), 건축위원회  
(건축법)로 대체가능

#### 주요 내용

건축기획 적정성, 사전검토 수행안건 관련사항 등 심의  
→ 공공기관은 심의결과 반영 및 조치 이행의무



## 4.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국가·지역공공건축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의2)

####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

국가·지역 공공건축의 효율적 운용, 품격향상과 관련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핵심조직으로서 역할

#### 대 상

국가: 국가공공지원센터(세종시)  
지역: 시장·구청장이 지역공공지원센터  
설치가능

#### 주요 업무

공공건축 건축기획 수립 및 자문, 사전검토 업무,  
자문 요청에 대한 응답 등(법정 업무)

#### 승인·평가

사전검토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